

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입주기업 모집 공고

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I. 개요

1. 소재지 :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(용운동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)

2. 신청자격

창업보육기업
가. 예비창업자(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) 나.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다. 입주 후,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라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입주 제외 대상 불가 ※ 입주제외대상: [붙임1] 참조

3. 모집산업분야 : 한방바이오 / 환경에너지 / ICT분야 등

4. 모집내용

구 분	창업보육기업	
건물구분	산학협력관	
전용면적	18.9평(62.47m ²)	9평(29.75m ²)
모 집 수	1개社	2개社

※ 1년 단위 입주계약 (입주 기간은 3년까지이며 평가를 통한 추가 2년 연장 가능)

6. 입주절차



※ 입주 신청기업은 사전 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를 권장함

II. 평가 및 선정조건

1. 입주기업 선정방법

- 1차: 서류 평가
- 2차: 대면 발표 평가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
2. 평가일정

- 평가일시: 2025. 5월 5주차(예정)
- 평가장소: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 102호
- 평가결과: 개별통보

3. 평가항목: 창업자 역량(20점), 사업성(20점), 기술성(20점), 시장성(20점), 보육센터 목적과의 부합도(20점), 가점(최대 5점)

※ 가점: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가점 기준

4. 선정기준: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이 심사표를 기준으로 상대평가(70점 이상)

5. 우대사항: 사회적기업, 제대군인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

Ⅲ. 입주조건

1. 입주기업 부담금

가. 임대보증금 : 3년차 월 부담금(임대료)의 10개월 분

나. 월 부담금 (VAT별도)

항 목		1평 단위 임대료		
		1년차	2년차	3년차 이상
산학협력관	창업보육	20,000원	25,000원	30,000원

※ 입주 1~2년차 창업기업에 감면혜택 제공

2. 공과금(전기, 냉난방): 각 호실별 검침 후 실비 별도 청구

－ 입주 시설 관리비: 없음

3. 입주기업 지원

구 분	내 용	
공 통	산학협력관 / Edu-Park 세미나실, 회의실 이용 가능	
창업보육기업	경영지원	회계 및 세무, 법률, 자금, 마케팅 등(컨설팅, 교육 등)
	기술지원	기술 및 제품 개발, 시제품 제작 등
	기타	교육 지원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추진 지원

Ⅳ. 모집 일정

1. 접수기간: 2025. 5. 9.(금) ~ 5. 23.(금) 23:00까지

2. 제출서류

가. 입주신청서

－ 보육센터 입주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(별첨. 해당양식) 제출

나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(해당시)

다. 재무제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(매출 및 고용 해당시)

라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
마. 발표자료 (기술소개 및 사업계획서 PPT, 10분 내외)

3. 입주계약 체결: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

V. 신청접수 및 문의

1. 접수방법: 온라인(E-mail) 및 방문(산학협력관 127호) 접수
2. 접수처: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62(용운동 대전대학교),
산학협력관 127호 창업보육센터 / soo_jj@dju.kr
3. 문의처: 유수진 매니저 / 042-280-4877

※ 건물위치안내



[붙임1]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

-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
-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
- ③ 부동산업(70)
-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
- ⑤ 기타 서비스업(93)
-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
-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
 - 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
 -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
 - 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
 - 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
 - 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 - 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(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.)
 - 75 사업지원서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
 - 76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 - 80 교육서비스업
 - 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
 - 88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
 - 90 하수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
 - 91 회원단체
 - 92 수립업
 - 95 가사서비스업
 - 99 국제 및 외국기관

가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(동법 시행령 제4조)의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 영위자

나.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

다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
라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

마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

바.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자